
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	보 도 자 료			
	보도	2017. 12. 28.(목) 조간	배포	2017. 12. 27.(수)
담당부서	보험감리실	이창욱 실 장 (3145-8220), 서영일 팀 장 (3145-8240)		

제 목 : 장애보험금 지급기준을 전면 정비합니다.

- 「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개정 예고

- ▶ **보험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장애기준 도입**
 - 평형기능 장애, 폐의 호흡기능 장애 등 신설
- ▶ **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장애판정기준 정비**
 - 두 다리의 길이 차이로 단축장애 평가, 다발성 반흔은 포괄하여 장애 평가, 하나의 장애로 인한 파생장애는 합산하여 평가, 식물인간상태 보장 명확화 등
- ▶ **의학적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애검사방법 개선**
 - 최대개구량 또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 상태 등으로 씹어먹는 기능 평가, 정신장애진단 점수 평가방법 도입 등

I. 추진배경

- 소비자 권익 제고 등을 위해 그간의 의료기술 발달 및 새로운 장애판정 방법 등을 반영하여 장애판정 기준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험 표준약관상 장애분류표 개정을 추진
- '16.3월부터 보험업계 T/F, 의료자문,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장애분류표 개정안을 마련

* **장해분류표** : 「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[별표15] 생명보험 및 질병·상해보험 표준약관상 부표로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, 동 기준에 따른 장해 정도(3%~100%)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(후유장해보장 특약 가입時)

II. 주요 개정내용

1. 보험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장해기준 도입

- (현황)** 의학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장해임에도 현행 ‘장해분류표’상 판정기준이 없어 장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
- (개선)** 「산업재해보상보호법」상 장해등급기준, 의료자문 결과 등을 참고하여 그간 보장받지 못한 장해를 추가
 -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어지러움증에도 불구하고, 장해기준 미비 → 귀의 평형기능 장해기준을 신규 도입, 장해로 인정
 - 직장생활이 불가능한 호흡곤란에도 불구하고, 폐는 이식한 경우만 장해 인정 → 폐질환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관련 장해 기준(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한 경우)을 신규 도입하여 장해보험금 지급

2.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장해판정기준 정비

- (현황)** 장해의 정의, 판정방법 등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분쟁 등을 유발하는 경우 발생
- (개선)** 주요 분쟁발생 사례 등을 중심으로 장해판정방법 등을 개선하여 소비자 권익 제고 및 불필요한 분쟁 예방

- 한쪽 다리가 짧아진 때에만 장애인정 →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일정이상(예 : 1cm)인 경우 장애인정
- 얼굴에 여러개의 흉터에도 불구하고, 5cm이상인 흉터 중 가장 큰 흉터만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→ 얼굴에 여러개의 흉터가 있을 경우 각 흉터의 길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
- 하나의 장애로 인해 둘 이상의 파생장애 발생한 경우 장애판정 기준이 불분명 → 여러개의 파생장애가 발생한 경우 각 파생장애의 지급률을 합산하여 장애 평가(☞ 대법원 판례 반영)
- 식물인간상태에 대한 장애인정 여부가 불명확 → 식물인간상태도 각 신체부위별 장애판정 기준에 따라 장애를 평가토록 명확화

3. 의학적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애검사방법 개선

- **(현황)** 일부 장애의 판정기준이나 검사방법이 의료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의학적 객관성 확보가 미흡
- **(개선)** 의료자문 결과 등을 반영하여 현재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객관적 검사방법 도입
 - 씹어먹는 기능 장애를 삼키기 어려운 음식(물, 미음, 밥, 빵 등) 기준으로 평가 → 최대 개구량(開口量) 또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(교합) 상태 등 객관적 평가기준 도입
 - 정신행동 장애를 '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때'로 규정하고 있어 추상적 → 보건복지부 장애평가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신장애 진단 GAF(Global Assessment Function)점수 평가방법 도입 등

Ⅲ. 향후 일정

□ 「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개정안 예고

-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고('17.12.27.~'18.2.5, 40일간)하고
- 사전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·시행할 예정

□ 개정 장해분류표 적용('18.4월 신규계약부터~)

붙임 : 장해분류표 주요 개정내용(요약)

< 장애분류표 주요 개정내용(요약) >

구 분	현 행	개 정
1. 보험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장애기준 도입		
①평형기능 장애 신설	청각 기능만을 기준으로 귀의 장애를 판정	평형기능 장애를 신설
②폐기능 저하로 인한 장애 신설	폐를 이식한 경우에만 장애 인정	폐기능 검사상 FEV1* 정상예측치가 40% 이하로 저하된 경우에도 장애 인정 * 1초량: 최대흡수수준에서 1초의 최대호기량
2.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장애판정기준 정비		
①파생장애 평가 방법 명확화	하나의 장애로 둘 이상의 파생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평가 방법이 불분명	하나의 장애로 둘 이상의 파생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 장애의 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초 장애의 지급률과 비교하여 높은 지급률을 적용토록 명확화 (1.5 대법원 판례 반영)
②식물인간상태 보장 명확화	식물인간상태가 된 경우 장애평가 기준이 불분명	식물인간상태의 경우에는 각 신체 부위별 판정기준에 장애를 평가토록 명확화
③각막이식술시 시력장애 평가 기준 신설	각막이식술시 장애판정 기준이 없음	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
④다발성 반흔 평가방법 개선	다발성 반흔 발생시 가장 큰 반흔을 기준으로 장애를 평가	각 부위(얼굴, 머리, 목) 내의 다발성 반흔은 길이 또는 면적을 합산하여 장애 평가(5mm 미만은 제외)
⑤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추상 평가방법 개선	각 부위별로 추상(추한 모습)장애를 평가하여 가장 큰 장애를 인정	추상(추한 모습)이 얼굴과 머리 (또는 목)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 머리 (또는 목)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/2을 얼굴의 추상 (추한 모습)으로 보고 합산하여 장애를 평가
⑥일부 척추의 운동장애 지급률 상향	부위와 상관없이 2개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를 약간의 운동장애로 평가	머리뼈와 상위경추간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는 심한 운동장애(또는 뚜렷한 운동장애)로 평가 (1.5 지급률 상향)

⑦다리의 단축 장애 평가방법 개선	한 다리가 짧아진 경우를 장애로 인정	과신장 등을 감안하여 두 다리의 길이 차이를 기준으로 장애를 평가
⑧심장 기능을 잃은 경우 지급률 상향	다른 장기와 동일하게 75% 인정	심장 기능의 장애는 그 개호의 필요성, 심각성,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100%로 상향
⑨소장 길이를 잘라낸 경우 장애평가기준 개선	소장을 3/4 이상 잘라내었을 때 장애를 인정	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장애를 인정(현행 기준과 병행 적용)
⑩정신행동장애 판정기간 단축	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 정신행동 장애를 판정	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정신행동 장애를 판정
⑪신체부위 관련 삽화 삽입	일반인이 익숙하지 않은 신체부위에 대한 설명이 없음	체간골, 손가락, 발가락 등 각 부위의 삽화를 추가

3. 의학적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애검사방법 개선

①씹어먹는 기능 장애 평가기준 개선	씹어먹는 기능 장애를 삼킬 수 있는 음식의 종류로 평가	병원에서 실제로 장애 판정시 사용 하는 개구운동,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 등과 관련한 기준을 신설
②말하는 기능 장애 평가기준 개선	말하는 기능 장애를 4종 어음* 중 몇 가지 어음을 발음하지 못하는지로 평가 * 입술소리, 잇몸소리, 입천장소리, 목구멍소리	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평가 등에 사용되는 객관적 검사방법(언어 평가검사, 자음정확도 검사)을 도입
③정신행동 장애 판정기준 보완	정신행동 장애를 ‘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때’ 등으로 규정	보건복지부 장애평가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신장애 진단 GAF(Global Assessment Function)점수 평가방법 도입

※ 시행일 : 2018. 4. 1. 이후 체결되는 계약